

[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편 드 명	BNK법인MMF1호(국공채)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 운용전문인력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효 력 발 생 일	2025년 05월 30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u>김재욱</u>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u>홍진선</u>	- 2025.05.19 기준으로 업데이트 * 책임운용전문인력: <u>홍진선</u>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u>김혜진</u>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u>김재욱</u>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u>홍진선</u>	- 2025.05.19 기준으로 업데이트 * 책임운용전문인력: <u>홍진선</u>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u>김혜진</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5.05.30: 운용전문인력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전문인력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u>김재욱</u>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u>홍진선</u>	- 2025.05.19 기준으로 업데이트 * 책임운용전문인력: <u>홍진선</u>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u>김혜진</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가. (생략)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가. (현행과 동일)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p>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u>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 (이하 생략)</p> <p>(2) ~ (3) (생략)</p>	<p>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삭제> (이하 현행과 동일)</p> <p>(2) ~ (3) (현행과 동일)</p>
--	--	--

<끝>.